

인천광역시검단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선	기관위원장
람	

제 19 호
2026. 9. 23.(수)

차 례

고 시

○인천광역시검단구 고시 제33호	소하천등 정비(소하천, 소하천구역, 소하천시설의 점용·사용) 허가 고시	— 1
○인천광역시검단구 고시 제34호	도로명주소 고시	— 2

공 고

○인천광역시검단구 공고 제324호	도시관리계획(검단2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입안(안) 공고·열람	— 4
--------------------	--	-----

소하천등 정비(소하천, 소하천구역, 소하천시설의 점용·사용) 허가 고시

「소하천정비법」 제10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(「소하천정비법 시행령」 제12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(소하천,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·사용)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. 9. 23.

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

1. 하천의 명칭: 금곡천(소하천)

가. 허가 번호: 제2026-3호

나. 허가년월일: 2026. 9. 18.

2.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 명: 소**

나. 주 소: 경기도 고양시 일산**

3. 점용의 목적 및 개요: 진입로

4.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 치: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곡동684-62 및 695

나. 면 적: 총 27m²

5. 점용허가의 유효기간: 2026. 9. 18. ~ 2031. 9. 17.

도로명주소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1조와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(변경·폐지 포함)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. 9. 23.

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

○ 고시내용 : 총1건(건물번호 부여 1건)

지번주소 (종전주소)	도로명주소 (새주소)	도로명주소 부여(변경, 폐지)사유	도로명주소 부여(변경, 폐지)고시일 (효력발생일)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(별 지 참 조)		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토지정보과 (☎ 726-7321)에 문의 또는
검단구청(www.geomdan.go.kr) 및 도로명주소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효력발생일(2026년 9월 23일)부터 법정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공부의 주소는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서 직권으로 정정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 신청은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도로명은 해당 지역과 도로의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, 시·도지사,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여합니다.
- 건물번호는 도로의 시점부터 종점까지 일정 간격으로 나누어 왼쪽에는 홀수,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를 부여합니다.

[붙임] 고시 목록

연번	구분	지번(변경전)주소	도로명주소	주소 부여사유	고시일자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1	건물번호 부여	인천광역시 검단구 원당동 997-9	인천광역시 검단구 당곡로 20 (원당동)	신축	20260923	20200720	"당곡"이라는 옛 지명에서 착안

도시관리계획(검단2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
입안(안) 공고·열람

도시관리계획(검단2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입안(안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9. 23.
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

1. 도시관리계획(검단2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 주요내용

- 위 치: 인천광역시 검단구 왕길동 663-3, -4, -5번지
- 결정(변경) 내용
 - 가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

도면 표시 번호	구 역 명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-	검단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, 왕길동, 당하동 일원	999,838.6	-	999,838.6	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위치 표기 현행화
-	검단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인천광역시 검단구 마전동, 왕길동, 당하동 일원				

- 나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없음)
- 다.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없음)

라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

1) 가구 및 획지 결정(변경) 조서

- 상업시설용지(D-1)(변경)

기 정						변 경					
도면 표시	가 구 번 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고	도면 표시	가 구 번 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고
			위 치	면적(㎡)					위 치	면적(㎡)	
D-1	1	7,282.8	1	395.4		D-1	1	7,282.8	1	395.4	
			2	253.7					2	253.7	
			3	238.1					3	238.1	
			4	1,237.1					4	1,237.1	
			5-1	243.8					5-1	243.8	
			6	288.1					6	288.1	
			7	319.3					7	319.3	
			7-1	138.6					7-1	138.6	
			8	393.1					8	393.1	
			9	415.9					9	415.9	
			10	340.6					10	340.6	
			11	354.9					11	354.9	
			12	243.7					12	243.7	
			13	380.1					13	380.1	
			14	189.7					14	189.7	
			15	781.9					15	781.9	
			16	866.2					16	866.2	
			17	202.6					17	202.6	
	5	4,095.5	1	120.7			5	4,095.5	1	120.7	
			2	171.8					2	171.8	
			3	136.0					3	136.0	
			4	160.5					4	160.5	
			5	151.8					5	151.8	
			6	131.2					6	131.2	
			7	267.8					7	267.8	
			8	565.3					8	565.3	
			9	2,390.4					9	2,390.4	

기 정						변 경					
도면 표시	가 구 번 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고	도면 표시	가 구 번 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고
			위 치	면적(㎡)					위 치	면적(㎡)	
D-1	6	4,641.0	1	307.0		D-1	6	4,641.0	1	307.0	
			2	326.9					2	326.9	
			3	433.2					3	433.2	
			4-1	646.5					4-1	646.5	
			4-2	646.5					4-2	646.5	
			5	656.6					5	656.6	
			6	835.9					6	835.9	
			7	788.4					7	788.4	
	7	6,247.1	1	338.6			7	6,247.1	1	338.6	
			2	558.0					2	558.0	
			3	227.1					3	227.1	
			4	1,360.4					4	1,360.4	
			5	1,118.8					5	1,118.8	
			6-1	1,402.1					6-1	1,402.1	
			6-2	424.0					6-2	424.0	
			7	818.1					7	818.1	
	62	2,300.9	1	422.3			62	2,300.9	1	422.3	
			2	607.4					2	607.4	
			3	485.9					3	485.9	공동건축 (3,4,5)권장
			4	436.1					4	436.1	
			5	349.2					5	349.2	
	63	3,025.0	1	201.4			63	3,025.0	1	201.4	
			2	199.9					2	199.9	
			3	199.2					3	199.2	
			4	297.8					4	297.8	
			5	303.1					5	303.1	
			6	875.2					6	875.2	
			9	948.4					9	948.4	
	64	4,082.1	1	730.2			64	4,082.1	1	730.2	
			2	335.2					2	335.2	
			3	327.9					3	327.9	
			4	355.9					4	355.9	

기 정						변 경					
도면 표시	가 구 번 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고	도면 표시	가 구 번 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고
			위 치	면적(㎡)					위 치	면적(㎡)	
D-1			5	728.6		D-1			5	728.6	
			6	503.0					6	503.0	
			7	1,101.3					7	1,101.3	
	65	3,128.4	1	513.2			65	3,128.4	1	513.2	
			2	793.9					2	793.9	
			3	469.3					3	469.3	
			4	390.8					4	390.8	
			5	961.2					5	961.2	
	67	1,955.0	1	350.5			67	1,955.0	1	350.5	
			2	429.6					2	429.6	
			3	348.3					3	348.3	
			4	220.3					4	220.3	
			5	350.1					5	350.1	
			6	256.2					6	256.2	
	68	1,859.3	1	257.9			68	1,859.3	1	257.9	
			2	822.9					2	822.9	
			3	370.1					3	370.1	
			4	204.4					4	204.4	
			5	204.0					5	204.0	

2) 변경 사유서

가 구 번 호	기 정			변 경			변경사유
	위 치	면적 (㎡)	비고	위 치	면적 (㎡)	비고	
62	3	485.9	-	3	485.9	공동건축 (3,4,5) 권장	○ 공동건축(권장)을 통해 기존 의료시설을 증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
	4	436.1		4	436.1		
	5	349.2		5	349.2		

마. 건축물에 대한 용도 · 건폐율 · 용적률 · 배치 · 형태 · 색채 · 건축선에
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없음)

- 바. 건폐율, 용적률 높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완화적용에 관한 사항 (변경없음)
- 사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없음)

2.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

- 열람기간: 공고일로부터 14일 간
- 의견제출: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3. 열람장소

- 인천광역시 검단구청(도시계획과, 032-726-7133, 검단구 독정로125번길 12)

4. 관계도서

- 게재생략 (열람 장소에 비치)